

과거와의 대면, 특히 친일과 청산과 관련하여

홍순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한 번쯤이라도 이 말을 들어 본 사람이 라면, 이 말을 요즈음처럼 실감나게 느낀 적은 좀처럼 없었을 것이다. 국내 외적으로 역사 문제가 언론의 주요 관심사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국내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제가 문제인 만큼 현재의 돌아가는 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소 에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낡은 역사책을 새삼스럽게 꺼내 보는 이도 혹 있을지 모르겠다.

조선왕조의 멸망 원인을 당쟁에서 구했던 일본 역사학자 시데하라가 쓴 『한국정쟁지』는 조선시대 정치사에 관한 기록이 분명하지만, 오늘날 그 책은 조선시대의 정치사보다는 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최근 한중 양국간의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 준 충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그 자체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미구에 닥칠지도 모르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격변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일 것이다. 역사 문제를 앞세운 외부로부터의 도

전은 어찌 중국으로부터 뿐이겠는가. 일본 또한 정치인들의 거듭되는 ‘과거사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요즈음의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과거사 대면’의 정국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다. 아직은 입법 과정에 있지만, 최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한 ‘진실을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결정했으니,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더욱 더 뜨거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 법을 통해 다룰 과거사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6·25전쟁 이후, 독재정권 시기 등 3시기를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일제강점기는 별도로 하고, 편의상 구분된 나머지 두 시기의 과거사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국가 폭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같은 실에 꿰인 동질적 성격의 역사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 하나 개별 사건이 지닌 구체적 성격과 배경은 다를지라도, 그 입법 목적이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과 인권 침해의 진상 규명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두 시기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전혀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수년째 활동 중이고, 지난 2000년 8월에는 제주 4·3사건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져 지난해 피해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가 대통령의 성명으로 발표되기까지 한 전례도 있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하나의 과거사로 묶여져 있지만, 일제시기의 문제와 친일파 청산 문제는 해방 이후사의 문제와는 그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른 ‘새로운’ 과거사의 문제이다. (친일파 청산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룰지, 아니면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함께 묶어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는 실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한 시대의 역사적 정리이다. 물론 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시점에서 곧 바로 손을 댈어야 할 과거사 문제이지만, 민족분단과 독재정권

의 출현으로 이 문제는 역사적 미청산 과제로 남겨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제16대 국회에서 일제시기의 친일파 청산에 관한 문제가 입법화되었다. 다만 해당 법률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 입법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17대 국회에 들어와 여당의 주도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여당이 다수인 현재의 원구성으로 본다면, 해방 이후 오랫동안 우리 현대사의 숙제로만 남아 있던 친일파의 역사 청산 문제도 이제 하나의 역사적 매듭을 짓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 시점에서 친일파 문제가 왜 문제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를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그 까닭의 하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친일파 청산에 동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부터 때로는 방법상의 문제로, 때로는 필요성의 문제로 새로운 논쟁거리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가 없으면, 입법 이후 실천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장애가 돌출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내부에서 친일파에 대한 적지 않은 토론과 연구 성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한 논의 자체에 대하여 여전히 회의적이거나 거부감을 지닌 세력이 매우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주로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이들 기득권 세력은 '민주화'의 문제와는 달리 친일파 담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론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는 '민주적 가치'와는 달리 '민족적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내면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렇다면 친일파 청산은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 내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 아닐까.

단순히 이미 지난 일을 들추어 무엇 하느냐는 식의 반론에서부터 일제시기 친일파가 아니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느냐라는 주장, 그리고 조금 더 심오하게는 학술적인 담론을 빌어 탈민족주의 또는 열린 민족주의라는 미명하

에 친일파 청산 문제의 거론을 편협한 민족주의로 치부하면서 그 무용성을 부르짖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반친일파청산론'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들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러한 주장들이 지닌 인식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그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해 보자.

‘친일파’는 개념상 부적절한 용어인가?

지난 16대 국회에서 '일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친일'이라는 용어의 적합성 여부 문제가 다시 언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때 문제를 제기한 측은 친일親日 그 자체는 '일본에 대하여 우호적이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나 그 해석은 자의적일 수 있는 모호한 용어이므로 '친일'이나 아나를 역사적 단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다분히 형식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마치 친미親美나 친중親中이나가 애국과 매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친일=매국'의 등식이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인 편협한 역사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친일'이라는 용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친일파란 말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친일이라는 말 뜻 자체만 따지고 보면 위와 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일제시기의 반민족 행위나 반민족행위자를 지칭하여 '친일 행위' 또는 '친일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 언어 소통상 혼란을 초래할 만큼 부적절한 개념인가? 그렇지 않다. 이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의 '친일'은 그 '친일' 이상의 의미로 사용된 지 오래이다. 그것은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시기에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 행위를 지칭하는 역사적 술어이다. 그 말 자체가 일제 침략과 식민지

배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생성되었고,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사회적 통념으로 고착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친일이란 개념의 내포가 아니라, 그 외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이다. 실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또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으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이 친일 또는 친일파 개념의 외연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적절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있어 왔고, 그에 앞서 법률적인 정의 또한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선 1946년 11월 3일 실시된 북한의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에서의 친일파 규정 내용이 있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그해 9월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장에는 친일파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반민족 행위의 내용과 그에 대한 형량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용어상의 개념이란 그 자체로서는 개념일 뿐이다. 특히 사회적 개념이란 그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개념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그에 부합되는 사실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술적인 용어나 술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친일파 청산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낳은 시대착오적 발상인가?

친일파 청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주의적 행태에서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친일파 개념 무용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일견 보다 논리 정연한 역사인식을 깔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개 일제 식민통치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건 적건 일제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반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른바 특수사정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일 행위의 피동

성에 관한 것이다. 그 요지는 오늘날 친일파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친일 행위는 대부분 일제의 강제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삼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인간의 행위가 능동적이었던 것인지 수동적이었던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개인 판단 능력과 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의 정도 등이 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친일파를 개념 규정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 판단의 척도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반민법’ 등에서도 이른바 반민족행위와 관련하여 그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일차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일파의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그 직위와 직책을 따지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식민지배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식민통치가 그러하듯이 친일행위 역시 구조적 차원의 시스템 문제인 것이다.

둘째는 일제시기의 친일 행위가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행위자의 전체 행위의 공과는 어떠한가를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친일 행위 자체가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단지 친일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행위의 동기나 결과까지를 함께 고려하면, 그들의 행위 가운데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본가들의 친일 활동에 대하여 두둔한다. 그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으로서의 당연한 활동이라든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족자본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지 친일이라는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내학계의 ‘식민지근대화론’ 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 주장을 ‘수탈론’에 근거한 ‘민족주의자’ 들의 비이성적인 감정적 대응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논의로 치

더라도, 친일 행위에 관한 한 이들의 주장은 다분히 이른바 '부적합성의 오류'에 해당된다. 즉 친일파 청산에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반민족적 친일 행위, 즉 특정한 정치적 행위이지, 친일파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논점과 상관없는 문제들을 끌어들이으로써 친일 청산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근대화론'과 '친일파 문제' 사이에는 어떠한 인식구조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좀 더 규명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밖에도 해방 이후로까지 문제를 확대하여, 친일파들의 건국 과정이나 건국 이후의 공적(예컨대, 공산당 소탕, 정부의 각료 역임 등)을 들어, 한 개인의 삶 행적에 대하여 그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친일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이 또한 문제의 본질에서 이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미 앞서 '친일파의 개념'에서도 지적했듯이, '친일파의 행위'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과정에서 일어난 '그 시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친일행위는 단순히 반민족 행위에 그치는 것인가?

혹자는 오늘날과 같이 국가의 경제조차 허물어져 가는 세계화 시대에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과거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과연 친일 행위에 대한 심판이나 과거사 청산은 단순히 민족적 또는 민족주의적 가치에만 근거할 뿐,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는 무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실제 역사상 있었던 친일 행위는 민족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범죄적 성격을 띠었다. 이를테면, 일진회가 의병과 양민 학살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일제의 독립운동가 및 양민에 대한 학살과 탄압, 침략 전쟁에의 무고한 인명의 동원, 노동자 징용, 여성의 군위안부 동원 등 전 세계가 규탄하는 이 모든 반인륜적 범죄가 친일파의 협조 없이 가능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여성의 위안

부 강제 동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범죄 행위로 심판이 내려진 문제가 아닌가? 민족적 가치가 보편성을 상실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제국주의화 하거나 파시즘화할 때인 것으로, 친일파 청산의 과제야말로 오히려 반제국주의나 반파시즘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친일파 문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인가?

우리는 해방 직후가 친일파 청산의 적기였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해방 직후야말로 거의 모든 국민이 친일파 청산에 공감하고 있었고, 그들의 죄상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 자료 또한 충분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주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역사적 과업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치 않았던 미·소의 남북 분할 점령과 남한에서의 미군정의 실시는 이러한 과업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구성원의 상당수가 친일세력이었던 한민당 등 일부 정치세력이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반공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했던 미군정이 이들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다시 친일파 청산의 기회가 있었으나, 친일세력의 거센 반발과 당시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반민특위'에 의한 친일파 청산 작업이 무산되었음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 청산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일까. 이 문제는 친일파 청산의 실패가 이후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를 되돌아보면 그 해답이 자명할 터이지만, 이는 차치하고서라도, 친일파 청산은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역사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정신대' 문제를 비롯하여 관련된 역사 청산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국간 중요한 외교적 현안으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의 청산이야말로 한일 양국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 앞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현안인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역사적 지향을 함께해야 할 남북의 통일 노정에 있어

서도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친일과 청산은 단지 법률적 차원의 해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역사학계의 몫이지만,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민간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연구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역사교육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인물 사전'의 편찬 사업이라 하겠다.

사족을 달자면, 야당 일각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바로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집권시기 문민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 야말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과거사에 대한 재인식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 그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성격,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가늠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모든 역사는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현대사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일제시기를 비롯하여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 쓰기일 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민주화 이후 우리 현대사의 첫 장을 여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한 것이다. ■

홍순권 skhong@daunet.donga.ac.kr | 본지 편집위원, 동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